

第 18 回 臨時會

2005. 9. 2(金)

檢 討 報 告 書

- ①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(안)
- ② 계룡 시민대상 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—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(안) —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계룡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증진 하고, 계룡축제 및 기념행사 등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, 시민의 날에 통합운영 필요함에 따른 것임.

□ 主要内容

-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시민의 날을 9월 19일로 지정함(안 제2조)
- 시민의 날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, 계룡시민의 계룡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, 계룡축제 및 기념행사 등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, 시민의 날에 통합운영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인정되며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계룡 시민대상 조례(안) -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제고와 애향심 고취를 위함

□ 主要内容

- 수상대상자를 관내에 3년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된 자. (제2조)
- 수상부문을 지역사회산업개발부문, 교육문화체육충효·봉사 부문, 민군협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함 (제3조)
- 수상자 심의 및 결정을 위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함(제4조)
- 수상자 결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함 (제6조)
- 시상은 격년제로 하되, 짝수해 시민의 날에 함 (제8조)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, 타인의 귀감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한 계룡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자긍심의 제고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, 충청남도의 1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계룡시, 서천군, 홍성군 등 7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9개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이미 제정된 상태이며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